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1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박덕흠 · 박성훈  
구자근 · 유용원 · 박성민  
곽규택 · 조정태 · 최형두  
안상훈 · 정동만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생 ·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 ·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.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,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 · 지출 구조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.

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단기간의 재정수입 · 지출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, 장래 세대가 실제 부담하게 될 보험료, 조세, 국고지원 및 잠재적 국가부담 규모를 장기적으로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. 그러나 현재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단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, 장래 발생할 수

있는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을 국민과 국회가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·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, 지출, 국가부담비용,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,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, 연금·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).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단서 중 “있다”를 “있되,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의 수입,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
2.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공무원연금
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
4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
5.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군인연금
6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⑤ ~ ⑪ (생 략)</p>	<p><u>연금</u></p> <p>6. 「<u>노인장기요양보험법</u>」에 <u>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</u></p> <p>⑤ ~ ⑪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